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일몰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을 수정하고, 상습 법 위반자 제재 강화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벌점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조항 삭제(안 제12조)

- 1)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사항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안 별표 제2호)

- 1) 현재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벌점을 가중하고 있음
- 2) 현행 법 상 벌점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점 가중 대상도 ‘대기업’이 아닌 ‘위탁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요건을 삭제하여 ‘유형에 관계 없이’ 반복적 법위반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벌점 경감(안 별표 제4호)

- 1) '19.7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
- 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별표] 별점의 부과기준(제5조의4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 가. "별점"이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의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별점에서 제3호에 따른 별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 다. "누산점수"란 별점을 부과하려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별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부과기준

- 가. 별점은 1)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2)의 시정조치 유형별 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별점만 반영하되, 2)의 라)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가)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마)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	--

2) 시정조치 유형별 별점기준

시정조치 유형	별점
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법 제27조제1항·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나. 위탁기업이 최근 3년 간 위반유형에 관계없이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에서 결정되는 별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3. 별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기업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2점
- 2)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 4)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을 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 따라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경감한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산정한다.

가) 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기본점수

구 분		점수
(1)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	(가) 위탁기업이 운영하는 표준계약서에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나)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을 외부에 공표한 경우 (다) 수탁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라) 기타 위 사항들에 준하여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2)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가)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정협의를 진행한 경우	0.5점
	(나) 1년간 인상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
	(다) 2년간 인상 실적이 있는 경우(운영연도가 연속하지 않아도 됨)	1.25점
	(라) 3년간 인상 실적이 있는 경우	1.5점

(3) 기본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

나) 납품대금이 인상된 수탁기업 수에 따른 추가점수

납품대금이 인상된 수탁기업 수	점수
(1) 10개 이상	0.25점
(2) 20개 이상	0.5점

다) 가)와 나)에 따라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반영율(수탁기업이 인상을 신청한 금액 대비 위탁기업이 인상해 준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인상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탁기업이 여러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인상 금액이 적용될 납품 물량의 품목별 비중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반영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향후 제도의 도입·운영을 계획하여 별점을 경감받은 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경감받은 점수를 취소하고 계획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에 따른 별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